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팬오션 주식회사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制定 2015.08.12

改定 2022.05.0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법 제 393 조의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 26 조에 근거하여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구성 및 권한

제3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인 이상의 사외이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 권한)

- ①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호의 대규모내부거래(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3 조 제 2 항에 규정된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위원회는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한다.

제 3 장 회 의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내부거래의 승인
2. 기타 상법 제 542 의 9 제 3 항에 따라 이사회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거래행위의 승인

제10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보고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결의 후 최초소집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3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4조 (간사)

-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회사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15.08.12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05.0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